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

議案 番號	
----------	--

提案年月日 : 1993.12. .

提案者 : 政治關係法
審議特別委員長

1. 代案의 提案經緯

1993年9月16日 趙世衡·洪思德·金炳午·朴相千·鄭均桓·李協·鄭璣
浩·柳寅泰 議員外 88人이 發議한 政黨法中改正法律案과 1993年11月15日
申相式·朴煥太·梁昶植·南在斗·姜信玉·金榮駟·姜三載·文正秀·康容
植·柳興洙·白南治·宋千永·崔在旭·河舜鳳·黃潤鎰·姜仁燮·金榮珍·
金炯旻·朴範珍·朴憲基·朴熙富·成武鏞 議員外 150人이 發議한 政黨法
中改正法律案을 審査한 結果, 第165回(定期會)第3次委員會(1993年12月1日
)에서 이를 각각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委員會의 代案을
提案하기로 함.

2. 代案의 提案理由

政黨設立要件 및 政黨加入資格·節次등을 완화 내지 간소화하여 國民의
政治參與機會를 확대하며 自生力있는 政黨運營을 제도적으로 保障함으로

씨 政黨이 국민속에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기타 選舉制度의 변경등으로 나타난 法體系 및 法運用上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代案의 主要骨子

가. 政黨合黨의 효력을 유예하는 選舉의 범위를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할 수 있는 公職選舉로 확대하여 선거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함(案 第4條의2).

나. 현재 大統領令에 위임되어 있는 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을 法律에 직접 規定하고, 言論人의 政黨加入을 전면 허용함(案 第6條).

다. 地區黨創黨準備委員會 申告制度를 廢止하여 創黨節次를 간소화함(案 第10條).

라. 法定黨員의 入黨願書에 印鑑證明書와 住民登錄票抄本을 첨부하도록 하는 規定을 削除함으로써 入黨節次를 간소하고 入黨節次를 구체적으로 規定함(案 第20條 및 第21條).

마. 政黨은 黨의 自主·自活을 도모하기 위하여 黨費納付制度를 設定·운영하도록 하고, 黨費納付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黨員의 除名·權利行

使의 제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黨憲으로 정하도록 하여 黨費納付
制度의 정착을 유도함(案 第22條의2).

바. 脫黨申告書를 소속 地區黨 뿐만 아니라 그 上級黨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脫黨의 效力은 脫黨申告書가 소속 地區黨 또는 그 上
級黨部에 접수된 때 발생하도록 하여 黨員의 脫黨權을 보장함(案
第23條第1項).

사. 政黨은 代表者등의 변경이나 合黨에 따른 조직개편시 法定簿冊과
政黨運營에 관련된 印章등의 인계 의무자를 黨憲에 정하도록 함(案
第24條의2).

아. 政黨設立에 필요한 法定地區黨數를 현재의 國會議員地域選舉區總數의
5分の 1이상(48개)에서 10分の 1이상(24개)으로 완화하여 政黨의 設
立을 용이하게 함(案 第25條).

자. 모든 代議員機關의 決議는 書面이나 代理人에 의하여 할 수 없도록
함(案 第29條의2).

차. 法定地區黨數와 法定黨員數등 요건 충족로 인한 政黨의 登錄取消을
유예할 수 있는 選舉의 범위를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할 수 있는 公
職選舉로 확대함으로써 政黨의 존립을 두텁게 보장함(案 第38條第1項).

카. 中央會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地區黨創黨承認 취소사유와 절차를 黨憲 또는 創黨準備委員會規約에 정하도록 하고, 黨憲 또는 規約에 規定된 사유외의 사유로 취소할 때에는 그 代議機關에서 投票로 결정하도록 함(案 第39條의2).

타. 創黨準備委員會 및 政黨의 명칭(略稱 포함)은 이미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 및 登錄된 政黨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도록 함(案 第43條第3項).

파. '創黨妨害등의 罪'를 新設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政黨의 創黨準備活動을 방해하거나 政黨活動을 방해하여 創黨準備委員會 또는 政黨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도록 함(案 第55條第1項 및 第2項).

政黨法中改正法律案

政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2第2項但書중 "國會議員의 選舉日이 公告된 날로부터"를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할 수 있는 公職選舉의 選舉期間開始日부터"로 한다.

第5條중 "政黨의 創黨準備에는 20人以上の 發起人"을 "政黨의 創黨準備에는 中央黨의 경우에는 20人이상의, 地區黨의 경우에는 10人이상의 發起人"으로 한다.

第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條(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 國會議員選舉權이 있는 者は 公務員 기타 그 身分을 이유로 政黨加入 기타 政治活動을 금지하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政黨의 發起人 및 黨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國家公務員法 第2條 및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公務員. 다만,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選舉에 의하여 就任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國會議員의 補佐官·秘書官.

秘書 및 國會 交涉團體의 政策研究委員과 教育法 第75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教員중 總長·副總長·學長·副學長·教授·副教授·助教授·專任講師인 教育公務員을 제외한다.

2. 總長·副總長·學長·副學長·教授·副教授·助教授·專任講師를 제외한 私立學校의 教員

3.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第8條第1項本文중 "創黨準備委員會"를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로 하고, 第1項第5號중 "大統領令"을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하며, 同條第2項중 "創黨準備委員會"를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로 한다.

第9條第2項 내지 第4項중 "創黨準備委員會"를 각각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로 한다.

第1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條(地區黨의 創黨承認) 地區黨의 創黨에는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의 承認이 있어야 한다.

第11條第1項중 "中央黨의 創黨準備委員會의 代表者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地區黨의 創黨準備委員會의 代表者는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에"를 "그 代表者는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에"로 한다.

第11條의2중 "大統領令이"를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로 한다.

第12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政黨의 명칭(略稱을 정한 때에는 略稱을 포함한다)

第1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3條의2(同前一黨支部등의 경우) ①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事務所의 所在地
3. 責任者, 幹部 및 會計責任者の 住所·姓名, 다만, 邑·面·洞의 連絡所의 경우에는 責任者の 住所·姓名에 한한다.

②第1項의 登錄申請에는 責任者·幹部 및 會計責任者の 就任同意書を 첨부하여야 한다.

第14條중 "第12條 및 第13條"를 "第12條 내지 第13條의2"로 한다.

第17條를 削除한다.

第17條의2를 第17條로 하고, 同條(중전의 第17條의2) 前段중 "合黨前의"를 "合黨전의"로 하고, 同條 後段중"이 경우에는 合黨前의"를 "이 경우 合黨전의"로 한다.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0條(入黨) ①黨員이 되고자 하는 자는 署名捺印을 한 入黨願書를 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제출하여 入黨申請을 하여야 한다.

②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第1項이 規定에 의한 入黨願書를 접수한 때에는 黨員資格審査機構의 審議를 거쳐 入黨許可與否를 決定하여 黨員名簿에 登載하고 地區黨委員長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長은 黨員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入黨의 효력은 入黨申請人이 黨員名簿에 登載된 때에 발생한다.

③入黨申請人은 地區黨 또는 創黨準備委員會가 入黨願書의 接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正當한 이유없이 入黨審議를 지연하거나 入黨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入黨願書를 제출할 수 있으며,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入黨許可與否를 審査하여 入黨을 허가함이 相當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該當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申請人을 黨員名簿에 登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入黨의 효력은 入黨願書가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第21條 後段을 削除한다.

第2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2條의2(黨費) ①政黨은 黨員의 징예화와 黨의 財政自立을 도모하기 위하여 黨費納付制度를 設定·운영하여야 한다.

②黨費納付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黨員에 대한 權利行使의 제한, 除名등 필요한 사항은 黨憲으로 정한다.

第2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黨員이 脫黨하고자 할 때에는 脫黨申告書를 소속 地區黨에 제출하여야 하며, 所屬地區黨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上級黨部に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脫黨의 효력은 脫黨申告書가 소속 地區黨 또는 上級黨部に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級黨部가 脫黨申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地區黨에 통보하여 黨員名簿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脫黨證明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2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4條의2(法定簿冊등의 引繼) 政黨은 代表者등의 변경이나 合黨에 따른 組織改編시 法定簿冊과 政黨運營에 關連되는 印章등의 引繼義務者

를 黨憲에 정하여야 한다.

第25條중 "國會議員選舉法에 의한 地域選舉區總數의 5分の 1以上에 해당하는 數의 地區黨"을 "國會議員地域選舉區總數의 10分の 1이상에 해당하는 數의 地區黨"으로 한다.

第29條의2중 "政黨의 創黨 및 合黨에 관한 代議機關의 決議"를 "代議機關의 決議"로 한다.

第3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公職選舉候補者의 推薦) ①政黨의 公職選舉候補者의 推薦은 民主的이어야 한다.

②政黨의 公職選舉候補者 推薦에는 候補者를 推薦할 公職選舉의 選舉區를 管轄하는 該當黨部 代議機關의 意思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黨憲으로 정한다.

第38條第1項第1號但書중 "國會議員選舉日前"을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할 수 있는 公職選舉日전"으로 한다.

第39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9條의2(地區黨創黨承認의 취소)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地區黨創黨承認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黨憲 또는 創黨準備委員會

規約에 정하여야 하며, 黨憲 또는 規約에 規定된 사유외의 이유로 創黨承認을 취소할 때에는 中央黨 또는 創黨準備委員會의 代議機關에서 投票로 決定하여야 한다.

第43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創黨準備委員會 및 政黨의 명칭(略稱을 포함한다)은 이미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 및 登錄된 政黨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第46條중 "第6條 但書 및 第17條 但書"를 "第6條但書"로 한다.

第53條第1項중 "第12條 및 第13條"를 "第12條 내지 第13條의 2"로 하고, 同條第3項중 "第43條"를 "第43條第1項 또는 第2項"으로 한다.

第55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5條(創黨妨害등의 罪) ①偽計 또는 威力으로써 創黨準備活動을 방해하여 創黨準備委員會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偽計 또는 威力으로써 政黨活動을 방해하여 政黨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도 第1項에 規定하는 刑에 處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 시행당시 登錄된 政黨에 대하여는 第22條의2, 第24條의2, 第29條의2 및 第39條의2의 改正規定은 당해 政黨의 黨憲이 改正된 날부터 또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로 인한 國會議員選舉의 選舉期間開始日부터 적용한다.

- 1. 國家公務員法 第2條 및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公務員, 다만,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選舉에 의하여 就任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國會議員의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國會 交涉團體의 政策研究委員 과 教育法 第75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教員중 總長·副總長·學長·副學長·教授·副教授·助教授·專任講師인 教育公務員을 제외한다.
- 2. 總長·副總長·學長·副學長·教授·副教授·助教授·專任講士를 제외한 私立學校의 教員
- 3.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第8條(申告) ①創黨準備委員會를 結成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다음의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 1.~4. (생략)
-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한 事項
- ②創黨準備委員會는 第1項의 申告를 함으로써 그 活動을 개시할 수 있다
- ③(생략)

第8條(申告) ①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

- -----

- 1.~4. (現行과 같음)
 - 5.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 ②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
 -
 - ③(現行과 같음)

第9條(創黨準備委員會의 活動範圍)

①(생략)

②創黨準備委員會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結成申告日로부터 6月 이내에 한하여 創黨活動을 할 수 있다.

③創黨準備委員會가 第2項의 期間내에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黨의 創黨登錄申請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消滅된 것으로 본다.

④創黨準備委員會가 消滅된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뜻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10條(地區黨의 創黨) ①地區黨의 創黨準備에는 10人이상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②地區黨의 創黨에는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의 承認이 있어야 한다.

③地區黨의 創黨準備委員會를 結成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第8條第1項에 계기한 事項을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6條·第7條·第8條第2項 및 第3

第9條(創黨準備委員會의 活動範圍)

①(現行과 같음)

②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

③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

④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

第10條(地區黨의 創黨承認) 地區黨의 創黨에는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項과 第9條의 規定은 地區黨의 創黨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1條(登錄申請) ①創黨準備를 完了한 때에는 中央黨의 創黨準備委員會의 代表者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地區黨의 創黨準備委員會의 代表者는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에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⑤(생략)

第11條의2(黨支部등의 登錄申請) 政黨이 第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黨支部나 黨連絡所를 들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에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第12條(登錄申請事項-中央黨의 경우)

①中央黨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1. 政黨의 名稱

2.~7.(생략)

②(생략)

< 新 設 >

第11條(登錄申請) ①-----
-----그 代表者는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에 -----

②~⑤(現行과 같음)

第11條의2(黨支部등의 登錄申請) ----

中央選舉管理委員會 規則이 -----

第12條(登錄申請事項-中央黨의 경우)

①-----

1. 政黨의 명칭(略稱을 정한 때에는 略稱을 포함한다)

2.~7.(現行과 같음)

②(現行과 같음)

第13條의2(同前-黨支部등의 경우) ①
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第14條(變更登錄) 第12條 및 第13條의
登錄申請事項에 變更이 생긴 때에는
2週日안에 變更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그러나 黨員의 數의 變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條(黨員의 資格) 國會議員選舉權
이 있는 者는 公務員 기타 그 身分
을 理由로 政黨加入 기타 政治活動
을 금지하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
구하고 누구든지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大統領令으로 정
하는 公務員·敎員 및 言論人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第17條의2(合黨의 경우의 黨員) 第14
條의2의 規定에 의한 合黨의 경우
合黨前의 政黨의 黨員은 合黨된 政

1. 명칭

2. 事務所의 所在地

3. 責任者, 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다만, 邑·面·洞의
連絡所의 경우에는 責任者의 住所·
姓名에 한한다.

②第1項의 登錄申請에는 責任者·幹
部 및 會計責任者의 就任同意書を
첨부하여야 한다.

第14條(變更登錄) 第12條 내지 第13條
의2의-----

< 削 除 >

第17條(合黨의 경우의 黨員) -----

合黨전 의-----

黨의 黨員이 된다. 이 경우에는 合黨前의 入黨願書는 合黨된 政黨의 入黨願書로 본다.

第20條(入黨願書) ①黨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署名捺印을 한 入黨願書를 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入黨願書중 法定黨員數에 該當하는 數의 黨員의 入黨願書에는 印鑑證明書を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合黨전의

-----.

第20條(入黨) ①-----

----- 제 출하여 入黨申請을 하여야 한다.

②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黨願書를 접수한 때에는 黨員資格審査機構의 審議를 거쳐 入黨許可與否를 決定하여 黨員名簿에 登載하고 地區黨委員長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長은 黨員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入黨의 효력은 入黨申請人이 黨員名簿에 登載된 때에 발생한다.

③入黨申請人은 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가 入黨願書의 接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正當한 理由없이 入黨審議를 지연하거나 入黨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入黨願書를 제출할 수 있으며,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入黨許可與否를 審査하여 入黨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第21條(居住要件) 法定黨員數에 해당하는 數의 黨員은 당해 地區黨의 地域안에 居住하여야 한다. 이 黨員의 入黨願書에는 住民登錄票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新 設 >

第23條(脫黨) ① 黨員이 脫黨하고자 할 때에는 脫黨申告書를 所屬地區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該當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申請人을 黨員名簿에 登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入黨의 效力은 入黨願書가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第21條(居住要件) -----

-----, <後段削除>

第22條의2(黨費) ① 政黨은 黨員의 政예화와 黨의 財政自立을 도모하기 위하여 黨費納付制度를 設定·운영하여야 한다.
② 黨費納付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黨員에 대한 權利行使의 제한, 除名등 필요한 사항은 黨憲으로 정한다.

第23條(脫黨) ①-----
----- 소속 地區黨에 제출하여야 하며, 所屬地區黨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上級黨部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脫黨의 效力은 脫黨申告書가 소속 地區黨

②(생략)

< 新 設 >

< 新 設 >

第25條(法定地區黨數) 政黨은 國會議
員選舉法에 의한 地域選舉區總數의
5分の 1以上에 해당하는 數의 地區
黨을 가져야 한다.

第29條의2(書面決議의 금지) 政黨의
創黨 및 合黨에 관한 代議機關의 決
議와 所屬國會議員의 除名에 관한
所屬國會議員의 決議는 書面이나 代
理人에 의하여 議決할 수 없다.

第31條(公職選舉候補者의 推薦) 政黨
의 公職選舉候補者 推薦을 民主的이
어야 하며, 그 節次에 관하여는 黨

또는 上級黨部에 접수된 때에 발생
한다.

②(現行과 같음)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級黨部
가 脫黨申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즉
시 해당 地區黨에 통보하여 黨員名
簿의 기계를 말소하게 하고, 脫黨證
明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24條의2(法定簿冊등의 引繼) 政黨은
代表者등의 변경이나 合黨에 따른
組織改編시 法定簿冊과 政黨運營에
관련되는 印章등의 引繼義務者를 黨
憲에 정하여야 한다.

第25條(法定地區黨數) ----- 國會
議員地域選舉區總數의 10分の 1----

第29條의2(書面決議 금지) 代議機關의
決議-----

第31條(公職選舉候補者의 추천) ①政
黨의 公職選舉候補者의 추천은 民主
的이어야 한다.

憲으로 이를 定하여야 한다.

第38條(登錄의 取消) ①政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選舉管理委員會는 그 登錄을 取消한
다.

1. 第25條 내지 第27條의 要件을 具
備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要件
의 省略이 國會議員選舉日前 3月안
에 생긴 때에는 選舉日후 3月까지,
그외의 경우에는 要件缺時부터
3月까지 그 取消를 猶豫한다.

②(생략)

< 新 設 >

②政黨의 公職選舉候補者推薦에는
候補者를 추천할 公職選舉의 選舉區
를 관할하는 該當當部 代議機關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黨憲으로 정한다.

第38條(登錄의 取消) ①-----

1. -----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
할 수 있는 公職選舉日전-----

②(現行과 같음)

第39條의2(地區黨創黨承認의 취소) 中
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地
區黨創黨承認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
차를 黨憲 또는 創黨準備委員會規約
에 정하여야 하며, 黨憲 또는 規約
에 規定된 사유외의 이유로 創黨承
認을 취소할 때에는 中央黨 또는 創
黨準備委員會의 代議機關에서 投票
로 決定하여야 한다.

第43條(類似名稱등 사용금지)

①~②(생략)

< 新 設 >

第46條(違法으로 發起人이나 黨員이 된 罪) 第6條 但書 및 第17條 但書의 規定에 違反하여 政黨의 發起人이나 黨員이 된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3條(虛偽登錄申請罪 등) ①虛偽로 第12條 및 第13條의 登錄申請을 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생략)

③第4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新 設 >

第43條(類似名稱등 사용금지)

①~②(現行과 같음)

③創黨準備委員會 및 政黨의 名칭(略稱을 포함한다)은 이미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 및 登錄된 政黨이 사용중인 名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第46條(違法으로 發起人이나 黨員이 된 罪) 第6條 但書

第53條(虛偽登錄申請罪 등) ① 第12條 내지 第13條의2

②(現行과 같음)

③第43條第1項 또는 第2項

第55條(創黨妨害등의 罪) ①偽計 또는 威力으로써 創黨準備活動을 방해하여 創黨準備委員會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 하게 한 者는 7年이

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이하의 罰
金에 處한다.

② 偽計 또는 威力으로써 政黨活動을
방해하여 政黨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者도 第1項에 規定
하는 刑에 處한다.

공백